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항목 추가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)
- 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 개선)
- 라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9/26 개정 · 2022/9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신청인이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인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상장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모회사가 주주보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대상으로 정함(별표 2의2)
 -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 한함
 - 다만,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(자회사)의 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적용제외 가능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9/27 개정 · 2022/9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를 질적심사하여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
 - 변경 · 추가상장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여 상장법인의 변경 · 추가상장 신청 업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질적심사기준 개정(별표 6)

-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분할 후 5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 보호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
 - 자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 또는 유가 증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
- 다만, 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, 상장신청인인 자회사가 주된 영업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

□ 변경·추가상장 신청 서류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등(제47조, 제54조, 별표 5, 별표 14, 별지 제25호 서식)

- 변경·추가상장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서 서식 정비
-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 정비 및 거래량·주식분산 미달 관련 소액주주 정의 명확화

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9/30 개정·2022/10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50인 이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(별표 1 제3항 제1호 가목(2))

- (비율)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(기존) 5% 이상 → (개정) 3% 이상

□ VC등 대상 사모실적 인정기준 완화(별표 1 제2항 제1호 가목(3))

- (기간) 신규상장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 이후 → (개정) 5년 전의 날 이후
- (대상) VC·전문투자자 → (개정) 증권상장법인까지 확대
 - 단, 해당 증권상장법인의 투자 목적,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
- (비율) 발행주식(증권) 총수의 5% 이상 → (개정) 3% 이상
 - 사모가 2회 이상인 경우 최근의 사모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해당 사모 실적 가산 시 최초로 3% 이상이 되는 그 사모까지로 한정

라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2022/9/20 개정 · 2022/9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수용하여 사회책임투자(SRI)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 및 관리하고, 지속가능연계채권 수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지속가능연계채권 및 조달자금용도채권 개념 도입(제2조 제5호 · 제6호 신설)
 - 지속가능연계채권(Sustainability-Linked Bond)을 '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과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무증권'으로 정의
 - 조달자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녹색채권, 사회적채권, 지속가능 채권을 조달자금용도채권으로 범주화 함
 - 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「녹색채권 가이드라인(Green Bond Guidelines)」,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녹색채권 원칙(Green Bond Principles)」, 국제기후채권기구의 「기후채권 기준」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 - 사회적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사회적채권 원칙(Social Bond Principles)」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 -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「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(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)」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등에 부합할 것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 도입(제4조 제2호 라목 신설)
 -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(Sustainability-Linked Bond Principles) 및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 등을 준거원칙으로 정함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명시(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)
 - 등록신청서,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, 투자설명서, 사전 외부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등록 가능
-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록에 따른 정보공시사항 명시(제7조 제2항)
 - 종목명 · 표준코드 등 종목 정보, 준거원칙, 사회책임투자채권 구분표시,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, 투자설명서, 사전외부평가서류 및 사후보고서류(성과보고서, 외부평가보고서) 등을 공시
-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지속가능연계채권 성과보고서 검증 의무화, 성과보고서 및 외부평가보고서 제출시한 등 명시(제8조)

- 연간 핵심성과지표의 성과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및 이를 검증한 외부평가보고서 제출
- 지속가능성과목표 최종 판단일이 속한 연도분까지 매년 제출하되, 최초 제출은 해당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제출하고, 그 이후에는 매 연도말까지 제출
- 보고서 제출시기별 구분, 조달자금 사용 금액,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

□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등록 취소사유 및 등록 취소 공지 근거 마련(제9조 제1항)

- 등록취소 희망시, 상장폐지시, 성과보고서 또는 외부평가보고서 미제출,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

□ 등록 신청서상 지속가능연계채권 관련 기재사항 추가(별지 제1호 서식)

-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준거원칙, 핵심성과지표 및 판단일을 추가

□ 그 밖에 규정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 등

- 사회책임투자채권 관리체계 개념 명시(제2조 제9호)
- 준거원칙을 '제정기관별' 구분에서 '사회책임투자채권 유형별' 구분으로 변경(제4조 제2호)
-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영향보고서를 별도로 명시하고 상장폐지 시까지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(제7조 제2항 제5호,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·제3항, 제9조 제1항 제4호)
-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정보공시사항 등록으로 인한 법적, 행정적 면책사항을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확약하는 내용 추가(별지 제1호 서식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